

#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이찬열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91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1. 2.

발의자 : 이찬열 · 황주홍 · 김종회

박광온 · 안규백 · 신경민

이춘석 · 김해영 · 전혜숙

고용진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.

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.

특히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 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(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).

##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1항 중 “5천만원”을 “1억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3천만원”을 “5천만원”으로 한다.

제41조 중 “2천만원”을 “3천만원”으로 한다.

제42조 중 “1천만원”을 “2천만원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	-----
고 시행계획을 시행한 자는 2	-----
년 이하의 징역 또는 <u>1천만원</u>	<u>2천만원</u> -
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	-----
병과할 수 있다.	-----.